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 유럽인권협약 제12조에 대한 해설서

---

혼인할 권리

2023년 2월 28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목차

목차.....	3
일러두기 .....	4
서문.....	5
<b>I. 혼인할 권리.....</b>	<b>6</b>
A. 혼인할 권리의 제한 .....	6
1. 절차적 규칙 .....	6
2. 실체적 규칙 .....	6
a. 일부일처제 .....	6
b. 성별 .....	6
c. 혼인 적령 .....	7
d. 친족 관계 .....	7
e. 동의 .....	8
f. 행위능력 .....	8
g. 혼인 증명서 .....	8
h. 혼인 장소 .....	9
3. 특수 집단 .....	9
a. 성전환자.....	9
b. 동성혼 .....	10
c. 수감자 .....	10
d. 외국인 .....	11
4. 혼인의 결과 .....	12
5. 이혼 .....	12
<b>II. 가정을 구성할 권리.....</b>	<b>13</b>
A. 출산.....	13
B. 입양.....	14
C. 부부 접견.....	14
<b>인용 판례 목록.....</b>	<b>15</b>

##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12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1월 18일, § 154,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ęd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서문

1. 협약 제12조는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판소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법적 결과를 낳는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권리 행사 시 도덕적으로 민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점과 자녀 보호 및 안전한 가정 환경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요구를 평가하고 대응하는데 가장 적합한 당국이 판단한 바를 재판소의 판결로 성급하게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B. and L. v. the United Kingdom*, 2005, § 36).
2. 제12조가 보장하는 권리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된다.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약 제8조와 달리, 제12조는 제8조제2항(“법에 따라” “민주사회에 필요”하며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에서 허용되는 바와 같은 국가의 간섭을 허용하는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12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제8조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필요성” 또는 “강력한 사회적 필요”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판단재량을 고려하여 논란이 된 제한이 자의적인지 또는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Frasik v. Poland*, 2010, § 90).
3. 재판소는 국가가 해당 분야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누리고 있다 하여도, 국내법에 의해 협약 제12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O’Donoghu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0, § 84). 즉, 권리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방식이나 손상시킬 정도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F. v. Switzerland*, 1987, § 32; *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 49).
4. 협약 제12조 본문은 비교적 한정적인 데다가 재판소와 과거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해석도 그 범위를 크게 넓히지는 않았다. 협약 제12조는 가정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하면 혼인 이후의 가족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혼인하지 않았다면, 협약 제12조에 따른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I. 혼인할 권리

## 협약 제 12 조

“혼인 적령기의 남자와 여자는 이 권리행사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 HUDOC 주제어

남자와 여자(12) - 혼인 적령(12) - 혼인(12) - 가정의 구성(12) - 국내법(12)

## A. 혼인할 권리의 제한

5. 협약 제12조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할 권리는 체약국의 국내법 소관이다. 협약 기관들은 국내법에 규정된 혼인할 권리의 제한이 혼인의 공표, 예식 거행 같은 사안에 관한 형식적인 규칙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익적이라고 인정되는 고려사항 중에서도 능력, 동의, 금지되는 인척 관계의 범위 또는 중혼(重婚) 방지에 관한 실질적 조항도 포함할 수 있다(*F. v. Switzerland*, 1987, § 32).

### 1. 절차적 규칙

6. 절차적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는 혼인을 법률혼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국내법에 따라 종교혼도 인정할 수 있다.

7. 재판부는 혼인을 단순히 협약 제9조가 보호하는 사상, 양심, 종교를 표현하는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할 권리를 관장하는 국내법을 언급한 협약 제12조의 구체적인 조항이 적용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X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74, 위원회 결정). 특정 종교의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태에 따라 혼인을 계약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혼인할 권리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ibid.*).

8. 동시에 국가는 종교혼 인정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Muñoz Díaz v. Spain*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가 일부 종교혼을 합의에 따라 인정하였지만, 국가와 합의하지 않은 청구인의 로마족 혼인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협약 제12조와 더불어 제14조에 따라 각하하였다.

### 2. 실체적 규칙

#### a. 일부일처제

9. 제12조의 문구는 “혼인할 권리”가 회원국 내에서 고수하는 단일혼 원칙에 따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 혼인을 가리킨다고 암시한다(*Jonhston and Others v. Ireland*, 1986, § 52). 따라서 재판소는 국가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을 회원국 내에서 배제한 경우 제12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X v. the United Kingdom*, 1970, 위원회 결정).

#### b. 성별

10. 재판소는 제12조의 문구를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동성(同性)인 두 사람 간의 혼인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협약의 기타 모든 실체적 조항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와 자유를 부여했거나, “누구도” 특정한 유형의 금지된 대우를

받아서 안 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제12조의 문구는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협약이 채택된 1950년대에 혼인이란 의심의 여지없이 이성 동반자 간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로 이해하던 역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 55).

11. 재판소는 *Schalk and Kopf v. Austria* 사건에서 처음으로 동성인 두 사람이 혼인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협약 제12조를 이유로 피청구국이 동성 간 혼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동성혼에 관한 권리는 협약에 없었지만, 재판소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라는 협약의 성격에 따라, 제12조에 명시된 혼인할 권리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이성인 두 사람 간의 혼인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다만, 해당 시점에서 동성혼의 허용은 협약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정할 사안이었다(*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 61-62).

12. 이후 사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Hämäläinen v. Finland* [GC], 2014; *Oliari and Others v. Italy*, 2015;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2016).

### c. 혼인 적령

13. 협약 제12조가 보장하는 혼인할 권리는 권리 행사를 관장하는 국내법 소관이므로, 개인의 종교가 허용하는 혼인 적령이 더 낮은 상황에서 법률상 혼인 적령을 준수하라는 의무는 혼인할 권리의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Khan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6).

14. *Z.H. and R.H. v. Switzerland*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첫 번째 청구인과 두 번째 청구인이 각각 14세와 18세에 제3국에서 종교 예식으로 혼인을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스위스에 부부 망명을 신청하였다. 스위스 당국은 청구인들의 종교혼이 국내법상 유효하지 않고 특히 첫 번째 청구인의 어린 나이로 인하여 스위스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재판소는 종교혼 여부를 떠나 어떤 혼인이라도 14세 아동의 계약이라면 그것을 인정해야 할 의무를 협약 제8조 또는 제12조가 당사국에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12조는 혼인이 국내법으로 규율된다고 명시하였고, 권리 행사 시 도덕적으로 민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점과 자녀 보호 및 안전한 가정 환경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사회의 요구를 평가하고 대응하는데 가장 적합한 당국이 판단한 바를 재판소의 판결로 성급하게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Z.H. and R.H. v. Switzerland*, 2015, § 44).

### d. 친족 관계

15. 재판소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친인척에 대하여 혼인할 권리가 거부된 여러 사건을 조사하였다.

16. *Theodorou and Tsotsorou v. Greece*, 2019 사건에서 첫 번째 청구인은 두 번째 청구인의 자매와 과거에 혼인한 사이였다. 국내법이 직계 혈족 및 방계 혈족 간 혼인을 3촌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두 청구인의 혼인은 약 10년 만에 국가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 재판소는 먼저 청구인들의 혼인 무효 사안이 사후에 제기되었을 뿐, 일단 혼인을 공표하였을 때는 관할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혼인 제한은 예를 들어 첫 번째 청구인이 직전 혼인에서 얻은 딸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이나 정서 불안 또는 친족 관계나 친수에 대한 혼란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42개 회원국을 검토한 결과 두 국가만이 처제·형수와 형부·제부의 혼인에 대해 절대적이지 않은 혼인 제한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유럽이사회 회원국이 합의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혼인 무효는 청구인들의 혼인할 권리를 그 본질이 훼손될 정도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제한한 것이다.

17. 이와 유사하게, *B. and L. v. the United Kingdom*, 2005 사건에서 재판부는 시부모·처부모와 며느리·사위 간 혼인 금지가 협약 제12조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양쪽의

전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혼인할 수 있게 된다지만,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자녀가 부모보다 오래 사는 경향상 대체로 가능성이 낮은 가정이므로, 청구인들이 누려야 할 혼인할 권리의 본질이 손상된 점은 바뀌지 않는다. 의회에 호소하는 방법도 예외적인 데다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로 입법기관의 완전한 재량에 달려 있고 분명한 규칙이나 판례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낳는다(*B. and L. v. the United Kingdom*, 2005, § 35).

## e. 동의

18. 유럽평의회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혼인의 조건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강제혼은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의 혼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혼인할 권리에 망자와 혼인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M.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위원회 결정, 1987).

## f. 행위능력

19. 혼인할 권리는 판례법이 인정하는 실체적 제한 중 하나인 개인의 행위능력 제한으로 인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Delecotte v. France*,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강화된 보호 감독(*curatelle renforcée*)을 받던 상태에서 동반자와 혼인하기 위하여 감독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다. 후견인제도 판사는 그 결정을 복지 조사와 정신건강 평가를 근거로 확인하였으며, 최후로 프랑스 파기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소는 문제가 된 법률 조항과 승인 거부에 대해, 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재량이 당국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관련된 국내의 구제 수단을 이용하였으며 승인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대심절차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제한은 적절하게 규제되고 사법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자의적이거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혼인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

20. 재판소가 협약 제8조에 따라 심사(하고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Lashin v. Russia*, 2013 사건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혼인할 권리를 포함한 행위능력을 박탈당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정신 상태가 관련 의료 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실제로 완전한 무능력 판정을 필요로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무능력 확인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의 후견인이 청구인의 지위 심사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 결여되었다.

21. 이민법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는 오로지 이민 상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위장혼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협약에서 요구하는 접근성 및 명확성의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법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춘 사람 또는 사람의 범주가 선택한 동반자와 혼인할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Frasik v. Poland*, 2010, § 89).

## g. 혼인 증명서

22. 혼인 능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실체적 규칙의 목적은 무엇보다 위장혼 방지로, 그 자체로는 협약 제12조를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Sanders v. France*, 위원회 결정, 1996).

23. *Klip and Krüger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1997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서류(statement) 유효기간의 만료일 때문에 혼인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 경우는 제12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구인들이 선택한 혼인일이 유효기간 내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외국인 담당 부서가 새로운 서류를 발급할 수 없었거나 일부러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 *O'Donoghu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민 관리 대상자가 혼인 허가를 받기 전에 승인 증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이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승인 증명서 발급을 결정할 때 제안된 혼인의 진정성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고, 관련 제도를 다양하게 적용하다 보면 지정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혼인할 권리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빈곤한 청구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책정된 수수료도 혼인할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였다고 보았다.

## h. 혼인 장소

25. 혼인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혼인의 지리적 위치를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약혼자의 거주국에서 혼인할 수 있다면, 해당 약혼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제12조에 따른 개인의 혼인할 권리에 위배되지 않는다(*A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2, *A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1986; *Walter v. Italy* (dec.), 2006; *Savoia and Bounegru v. Italy* (dec.), 2006).

26. 나아가, 외국인이 독일 영토를 떠나야 했던 것이 혼인할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거주 허가가 거부되어 혼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혼인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X. v. Germany*, 위원회 결정, 1976).

## 3. 특수 집단

### a. 성전환자

27. 여러 사건에서 수술 후 성전환자가 부여된 성별을 기준으로 이성인 자와 혼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협약 제12조를 위반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전 판례에서는 제12조의 기초가 되는 전통적인 혼인 개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혼인이 목적인 때 피청구국이 개인 성별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기준을 채택하고 유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는 혼인할 권리의 행사를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체약국의 권한에 포함되는 문제로 간주되었다(*Sheffield and Horsham v. the United Kingdom*, 1998; *Cossey v. the United Kingdom*, 1990; *Rees v. the United Kingdom*, 1986).

28. 재판소는 청구인이 여성으로 살았고 성별 정정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남성과의 혼인이 법적으로 금지된 *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2002 사건에서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였다. 재판소는 제12조의 첫 문장이 남성과 여성을 명시적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협약 채택 이후 성전환 분야의 의학과 과학발달로 일어난 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혼인 제도에 주요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판결한 그 당시쯤 되면 해당 용어가 반드시 순전히 생물학을 기준으로 한 성별 결정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29. 성별을 변경한 사람의 기존 혼인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두 명의 동반자가 모두 혼인의 지속을 바라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혼인의 맥락에서 성별 변경의 효과를 규제하는 문제는 협약당사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결했다(*Parry v. the United Kingdom* (dec.), 2006; *R. and F. v. the United Kingdom* (dec.), 2006). 이와 유사하게, *Hämäläinen v. Finland* [GC], 2014 사건은 본인의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 성전환 청구인의 주장을 제8조 하에 심사하였다. 유럽은 해당 문제에 의견이 일치한 바 없고, 이 사건이 민감한 도덕적·윤리적 사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소는 피청구국에 인정되어야 할 재량은 그 폭을 여전히 유지하되, 수술 후 성전환자의 새로운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 여부에 관한 국가의 결정 및 서로 경쟁하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정한 규칙으로 모두 확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다(*ibid.*, §§ 70-75). 타국의 상황과 달리 핀란드에서는 기존 혼인을 국가 당국이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거나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청구인이 혼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재판소는 후천적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의 전제 조건으로 청구인의 혼인을 등록된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라는 요건은 동성 부부를 혼인과 거의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지라는 점에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ibid.*, §§ 76 및 87).

## b. 동성혼

30.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소는 *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사건에서 동성인 두 사람이 혼인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심사하였다. 재판소는 협약 채택 이후 혼인 제도에 주요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유럽에서 동성혼에 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재판소는 이제 제12조에 명시된 혼인할 권리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이성인 두 사람 간의 혼인으로만 국한된다고 보지 않지만, 사건 결정 당시 상황에서 동성혼 허용은 협약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율할 문제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협약 제12조를 이유로 피청구국 정부가 청구인들 같은 동성커플에게 혼인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 61-63).

31. 동시에, 다양한 국내 입법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미 시민 결합이 여러 측면에서 혼인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법적 지위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Schalk and Kopf v. Austria*, 2010, § 109; *Hämäläinen v. Finland* [GC], 2014, § 83;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2016, §§ 49 및 51 참조). 재판소는 *Oliari and Others v. Italy*, 2015 사건에서, 협약 제12조를 이유로 피청구국 정부가 청구인들 같은 동성커플에게 혼인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청구인들의 동성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특정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는 점에서 협약 제8조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목적과 범위가 더 일반적인 제8조와 더불어 제12조 또는 제14조로 체약국이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프랑스에서 시민 결합(PACS)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32. In *Orlandi and Others v. Italy*, 2017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해외에서 동성혼을 맺었고 이탈리아에서 혼인의 등록을 요청하였다. 재판소는 해외에서 맺은 동성혼의 등록과 관련하여 유럽 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의 혼인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청구인들이 과거 이탈리아에서 인정받은 권리는 단 하나도 박탈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혼인을 맺었던 국가에서 혼인을 통해 획득한 권리와 의무로 여전히 편익을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어떤 형태로도 혼인 등록을 거부한다는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가는 동성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특정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여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서 제8조에 따르는 공정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협약 제12조와 더불어 제14조에 따른 주장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c. 수감자<sup>1</sup>

33. 구금 그 자체로는 혼인할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Hamer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77). 수감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불가피하게 또는 묵시적으로 시민권과 특권도 일부 박탈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혼인할 권리 행사의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니다.

<sup>1</sup>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해설서(Guide on the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Prisoner’s rights) 참조.

다만, 제12조로 인해 국가가 수감자의 혼인에 관한 별도의 법률 또는 구체적인 규칙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Frasik v. Poland*, 2010, § 99; *Jaremowicz v. Poland*, 2010, § 63).

34. 중범죄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부과된 형의 유형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혼인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공익을 고려하면 정당화될 수도 있다. 다만, 종신형을 받은 수감자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Draper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보고서, 1980, § 62).

35. *Hamer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77 사건에서 청구인은 수감된 상태인 데다가 국내법상 교도소 내 혼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내무장관이 다른 곳에서 혼인할 수 있도록 임시 석방을 허가하지 않은 복합적 요인으로 혼인할 수 없었다. 계속된 지연으로 청구인이 형기 중 혼인할 가능성이 부정되고 혼인할 권리의 실체가 침해되었다.

36. *Frasik v. Poland*, 2010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해자가 청구인과 혼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배우자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청구인의 수감 중 혼인 허가를 자의적으로 거부한 것에 항의하였다. 재판소는 국내법원이 양 당사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 혼인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성격인지 평가하거나 혼인식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분석하고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당국은 특히 해당 관계가 당국이 받아들일 만하지 않거나 또는 여론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금된 자가 선택한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기로 한 결정을 간섭할 수 없다(*Frasik v. Poland*, 2010, §§ 94-95). 재판소는 구금 중 혼인에 관한 세부 규칙이 없다는 이유보다는 국내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자제력이 부족하고 협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공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12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37. 이와 유사하게, *Jaremowicz v. Poland*, 2010 사건에서 청구인은 수감 중 혼인할 수 있도록 잠시 교도소를 떠나는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교도소 보안이나 무질서 예방과 관련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한 거부는 정당하지만, 그 평가가 청구인과 약혼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과 질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는 자의적이었으며 제12조가 보장하는 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법으로 금지했을 때와 실제상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Jaremowicz v. Poland*, 2010, §§ 54, 56 및 60).

#### d. 외국인

38. 재판소는 제안된 혼인이 위장혼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금지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외국인의 혼인할 권리에 합리적인 조건을 적절히 부과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체약국이 위장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관련된 혼인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 반드시 제12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O'Donoghu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0, § 87).

39. 청구인들에게 국내법에 따른 서류(statement)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협약 제12조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Klip and Kurger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1977). *O'Donoghu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빈곤한 청구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혼인할 권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295파운드의 수수료는 그 정도로 충분히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40. 나아가 외국인의 혼인인 경우 출신국에서 직전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완전히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법상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라 혼인을 처리하는 것은 제12조를 위반하지 않는다(*X.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981).

## 4. 혼인의 결과

41. 제12조가 혼인 및 배우자 간 관계에 적용되는 범위는 혼인할 권리까지이다. 성(姓)을 선택할 권리 등 혼인의 일부 측면이 협약 제8조 단독으로 또는 제14조와 더불어 검토될 수 있으며 검토된 바 있다(*Burghartz v. Switzerland*; *Ünal Tekeli v. Turkey*).

42. 그러므로 제12조는 혼인할 권리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거나 혼인한 부부가 유사한 상황의 동거인보다 나은 위치에 있도록 보장하라는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지 않는다. *Marckx v. Belgium*, 1979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생아”의 부모가 혼인한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지 및 제12조가 혼인에 수반되는 모든 법적 효과가 혼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지는 협약 제12조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결론지었다.

43. *F.P.J.M. Kleine Staarman v.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1985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성이 혼인하면 장애 수당을 상실하게 되는 조항이 혼인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협약 제1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의 혼인할 권리 행사 능력이 장애 수당 철회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44. 동일하게, 제12조는 국가가 배우자끼리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가족생활의 해당 측면은 협약 제8조의 검토 범위이다(*Gribenko v. Latvia* (dec.), 2003; *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1985, §§ 62 및 68). 따라서 제12조는 국가가 자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신혼집을 차리거나 생활하며 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국 영토에 체류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국가가 이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국적자에게 특정 절차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Savoia and Bounegru v. Italy* (dec), 2006).

## 5. 이혼

45. 재판소는 ‘혼인할 권리’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가 혼인 관계의 형성만을 포함하며 그 해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1986). 이러한 해석은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에 나타난 대로 제12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12조에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

46. 더욱이 이혼할 권리는 1984년 서명을 위해 공개된 협약 제7의정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혼인 해소의 경우 배우자에게 특정한 추가 권리를 보장하는 의정서 제5조에서 이 문제를 다룰 기회가 없었다. 실제로 해당 의정서의 설명보고서 39단락은 제5조에 명시된 “그 해소의 경우”라는 표현이 “국가가 혼인 해소를 제공하거나 특별한 형태의 해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암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47. 더구나 제12조는 이혼을 허용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개시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Ivanov and Petrova v. Bulgaria*, 2011; *Piotrowski v. Poland* (dec.), 2016). *Piotrowski v. Poland* (dec.), 2016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국내법의 맥락에서 사실을 자세히 검토하고 포괄적인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었다. 국내 법원의 판결 이유에는 고려된 다양한 이해관계, 증거 평가 방법, 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 재판소는 청구인의 혼인할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건의 정황상 협약 제8조에 따라 발생하는 적극적 의무가 폴란드 당국이 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수락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8. 이와 유사하게, *Babiarz v. Poland*,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이혼 청구 기각이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국내 법원은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고 종합적인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1심 판결은 항소 법원의 검토를 거쳤고, 판결 이유에는 고려된

이해관계, 증거 평가 방법 및 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소는 청구인과 새 동반자 사이에 딸이 있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국내 법원은 청구인의 혼인 생활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판결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제12조의 제한된 범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국내 이혼법의 절차적 규칙과 실체적 규칙을 무시하고 그저 배우자를 떠나 새로운 동반자와 자녀를 갖기로 결심한 사람의 이혼 요청이 허용되어야 했을 것이다.

49. 다만, 국내법이 협약 제12조가 보장하지 않는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 제12조는 이혼한 사람에게 불합리한 제한 없이 재혼할 권리를 보장한다(*F. v. Switzerland*, 1987).

50. *F. v. Switzerland*, 1987 사건에서 재판소는 간통을 이유로 이혼이 허가된 경우 유책 당사자에게 1년에서 3년까지 부과되는 금지 기간은 혼인할 권리의 본질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K.M.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7 사건에서 이전 혼인이 유효하게 해소되어야 한다는 국내법의 요건을 준수하라는 제한은 재혼할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51. *Chernetskiy v. Ukraine*, 2016 사건에서 한 수감자는 당국이 이혼 등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본인은 수감된 상황에서 이혼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2005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새로운 동반자와 혼인하지 못하였다. 재판소는 지연이 발생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이 부재하였음을 참작하여 해당 제한이 부당하며 청구인이 새로운 동반자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였다고 보았다.

52. 합리적인 시간 내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때에도 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안이 발생한 상황도 있었다(*Aresti Charalambous v. Cyprus*, 2007). *V.K. v. Croatia*, 2012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청구인의 이혼 소송이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구인의 일부 판결 요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각하거나 묵살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소송 기간에 대하여 항의할 때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재혼할 계획이며 이혼 소송 기간 때문에 재혼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내 법원에 알렸다. 국내 당국이 이혼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고 상황에 따라 청구인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야 했던 것은 협약 제1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이 혼인할 권리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 II. 가정을 구성할 권리

53. 협약 제12조가 보장하는 가정을 구성할 권리는 혼인했을 때만 존재한다. 이 같은 상황은 부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X. v. Belgium and Netherland*, 위원회 결정, 1975), 제12조는 혼외자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54. 다만, 가정을 구성할 능력은 혼인의 조건이 아니다. 즉, 부부가 자녀를 임신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혼인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2002, § 98).

### A. 출산

55. 재판소는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그 자체로 자녀를 갖거나 손자녀가 생길 권리를 창출하지는 않는다고 확인하였다(*Šijakova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2003). 가정을 구성할 권리는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개인에게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았다(*X.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68).

56. *Boso v. Italy* (dec.) 사건에서 청구인은 아내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중단하여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당화되는 가족생활에 대한 제한이 그와 동시에 제12조의 위반을 구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또한, 부부 접견이라는 맥락에서 *X. and Y.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879 참조). 임신 중단이 이탈리아 법률에 따라 수행되었고, 따라서 모체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제8조 및 제12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다.

57. *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사건에서 수감자와 그의 아내는 인공 수정용 시설 사용을 거부당했다. 재판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시설에 접근하도록 국무장관이 허용할 때 확인하는 일반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정책은 그 구조가 서로 상충되는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고 개별 사건에서 제한의 비례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방해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결론 내렸다. 즉, 기준선을 너무 높이 책정하는 바람에 상충되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거나 문제의 제한이 비례성 원칙을 지키는지 평가할 수 없었다. 이러한 평가의 부재는 허용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재판소는 협약 제12조의 별도 검토 없이 제8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 B. 입양

58. 제12조는 해당 부부의 친자녀가 아닌 아동을 입양하거나 가족의 일원으로 삼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X. and Y.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77 그러나 부부가 자녀를 입양해야만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입양을 관장하는 국내법 조항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여 가정을 “구성”할 수도 있다(*X.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1981).

59. 재판소는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부부의 존재를 암시하며 그 자체로는 혼인하지 않은 개인에 의한 입양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X. v. Belgium and Netherland*, 위원회 결정, 1975; *Di Lazzaro v. Italy*, 위원회 결정, 1997). *Emonet and Others v. Switzerland*,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혼인하지 않은 사이인 청구인들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형태라면 제12조 하에서 입양할 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60. 한편, *E.B. v. France* [GC], 2008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8조와 더불어 제14조에 따라 독신 동성애자의 입양 허가 거부를 검토하였다. 국내법이 독신자의 입양을 허용함으로써 독신 동성애자의 입양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에서 국내 당국은 청구인의 입양 허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청구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차별하였고, 이는 협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차별이라고 지적하였다.

## C. 부부 접견

61. 자유의 박탈은 가정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된다. 재판소는 체약국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제한을 전제로 구금된 장소에 있는 개인에게 부부 접견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재판소는 부부 접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유럽 여러 국가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현재까지는 협약이 체약국에 그러한 접견 제공을 요구한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체약국이 지역사회와 개인의 필요와 자원을 성실히 고려하며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다(*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 81).<sup>2</sup>

<sup>2</sup>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해설서(Guide on the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Prisoner’s rights)참조.

##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협약 제44조의 의미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됩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의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뒤 이은 대재판부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3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인용된 사건에 대한 언어별 번역본은 모두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A v. the Netherlands](#), no. 11618/85, Commission decision of 6 May 1986, unreported  
[A v. the United Kingdom](#), no. 19186/91, Commission decision of 19 February 1992, unreported  
[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the United Kingdom](#), 28 May 1985, Series A no. 94  
[Aresti Charalambous v. Cyprus](#), no. 43151/04, 19 July 2007

### —B—

[B. and L. v. the United Kingdom](#), no. 36536/02, 13 September 2005  
[Babiarz v. Poland](#), no. 1955/10, 10 January 2017  
[Boso v. Italy](#) (dec.), no. 50490/99, ECHR 2002-VII  
[Burghartz v. Switzerland](#), 22 February 1994, Series A no. 280-B

### —C—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no. 40183/07, 9 June 2016  
[Chernetskiy v. Ukraine](#), no. 44316/07, 8 December 2016  
[Christine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8957/95, ECHR 2002-VI  
[Cossey v. the United Kingdom](#), 27 September 1990, Series A no. 184

—D—

*Delecolle v. France*, no. 37646/13, 25 October 2018  
*Dickson v. the United Kingdom* [GC], no. 44362/04, ECHR 2007-V  
*Di Lazzaro v. Italy*, no. 31924/96, Commission decision of 10 July 1997, Decisions and Reports (D.R.)  
no. 90-B, p. 134  
*Draper v. the United Kingdom*, no. 8186/78, Commission decision of 10 July 1980, Decisions and  
Reports (D.R.) no. 24

—E—

*E.B. v. France* [GC], no. 43546/02, 22 January 2008  
*Emonet and Others v. Switzerland*, no. 39051/03, 13 December 2007

—F—

*F. v. Switzerland*, 18 December 1987, Series A no. 128  
*F.P.J.M. Kleine Staarman v. Netherlands*, no. 10503/83, Commission decision of 16 May 1985,  
Decisions and Reports (D.R.) 42, p. 162  
*Frasik v. Poland*, no. 22933/02, ECHR 2010 (extracts)

—G—

*Gribenko v. Latvia* (dec.), no. 76878/01, 15 May 2003

—H—

*Hämäläinen v. Finland* [GC], no. 37359/09, ECHR 2014  
*Hamer v. the United Kingdom*, no. 7114/75, Commission decision of 13 October 1977, Decisions and  
Reports (D.R.) 10, p. 174

—I—

*Ivanov and Petrova v. Bulgaria*, no. 15001/04, 14 June 2011

—J—

*Jaremowicz v. Poland*, no. 24023/03, 5 January 2010  
*Johnston and Others v. Ireland*, 18 December 1986, Series A no. 112

—K—

*K.M. v. the United Kingdom*, no. 30309/96, Commission decision of 1997, unreported  
*Khan v. the United Kingdom*, no. 11579/85, Commission decision of 7 July 1986, Decisions and  
Reports (D.R.) 48, p. 253



*Klip and Krüger v. the Netherlands*, no. 33257/96, Commission decision of 3 December 1987, Decisions and Reports (D.R.) no. 91-A, p. 66

—L—

*Lashin v. Russia*, no. 33117/02, 22 January 2013

—M—

*M.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o. 12411/86, Commission decision of 4 March 1987, Decisions and Reports (D.R.) 51, p. 245

*Marckx v. Belgium*, 13 June 1979, Series A no. 31

*Muñoz Díaz v. Spain*, no. 49151/07, ECHR 2009

—O—

*O’Donoghu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34848/07, ECHR 2010 (extracts)

*Oliari and Others v. Italy*, nos. 18766/11 and 36030/11, 21 July 2015

*Orlandi and Others v. Italy*, nos. 26431/12 and 3 others, 14 December 2017

—P—

*Parry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2971/05, 28 November 2006

*Piotrowski v. Poland* (dec.), no. 8923/12, 22 November 2016

—R—

*R. and F.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5748/05, 28 November 2006

*Rees v. the United Kingdom*, 17 October 1986, Series A no. 106

—S—

*Sanders v. France*, no. 31401/96, Commission decision of 1996, Decisions and Reports (D.R.) no. 87-B, p. 160

*Savoia and Bounegru v. Italy* (dec.), no. 8407/05, 11 July 2006

*Schalk and Kopf v. Austria*, no. 30141/04, ECHR 2010

*Sheffield and Horsham v. the United Kingdom*, 30 Jul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

*Šijakova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no. 67914/01, 6 March 2003

—T—

*Theodorou and Tsotsorou v. Greece*, no. 57854/15, 5 September 2019

—U—

*Ünal Tekeli v. Turkey*, no. 29865/96, ECHR 2004-X (extracts)

—V—

*V.K. v. Croatia*, no. 38380/08, 27 November 2012

—W—

*Walter v. Italy* (dec.), no. 18059/06, 11 July 2006

—X—

*X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o. 2300/64, Commission decision of 10 February 1967, Collection of decisions 22, pp. 73-84

*X v. the United Kingdom*, no. 3898/68, Commission decision of 22 July 1970, Collection of decisions 35, pp. 102-108

*X. v. Belgium and Netherland*, no. 6482/74, Commission decision of 10 July 1975, Decisions and Reports (D.R.) 7, p. 76

*X. v. Germany*, no. 7175/75, Commission decision of 12 July 1976, Decisions and Reports (D.R.) 6, p. 139

*X. v. Switzerland*, no. 9057/80, Commission decision of 5 October 1981, Decisions and Reports (D.R.) 26, p. 207

*X. v. the United Kingdom*, no. 3075/67, Commission decision of 19 July 1968, Collection of decisions 28, pp. 94-108

*X. and Y. v. Switzerland*, no. 8166/78, Commission decision of 3 October 1978, Decisions and Reports (D.R.) 13, p. 241

*X. v. the Netherlands*, no. 8896/80, Commission decision of 10 March 1981, Decisions and Reports (D.R.) 24, p. 176

*X. and Y. v. the United Kingdom*, no. 7229/75, Commission decision of 15 December 1977, D.R. 12, p. 32

—Z—

*Z.H. and R.H. v. Switzerland*, no. 60119/12, 8 December 2015